

VIAC || Vienna International
Arbitral Centre

VIAC VIAC VIAC VIAC VIAC VIAC VIAC VIAC 중재규칙 VIAC VIAC VIAC
비엔나규칙

www.viac.eu

비엔나국제중재센터

Imprint

Publisher: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Wiedner Hauptstrasse 63, POB 319, 1045 Vienna, Austria

Layout: WKO Inhouse GmbH | Media
Wiedner Hauptstrasse 120-124, 1050 Vienna, Austria

Translator: Innhwa Kwon

The German and the English version of the Vienna Rules are the only official texts which were adopted by the Enlarged Presiding Committee of the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The Korean version at hand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erman version.

목차

비엔나규칙

총칙

제1조	비엔나국제중재센터	4
제2조	이사회	4
제3조	국제자문이사회	5
제4조	사무국장 및 사무국	5
제5조	언어	6
제6조	정의	6

중재의 개시

제7조	중재신청	7
제8조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	8
제9조	반대신청	8
제10조	신청요금	9
제11조	중재기록의 송부	9
제12조	기한, 송달 및 서면제출	10
제13조	대리	11

제 3 자의 참가 및 병합

제14조	제 3 자의 참가	11
제15조	병합	12

중재판정부

제16조	중재인	12
제17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13
제18조	다수당사자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	14
제19조	지명의 승인	14
제20조	중재인 기피	15

제21조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	15
제22조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의 효과.....	16
전문가 기피	
제23조 전문가 기피	17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제24조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17
중재판정부의 절차	
제25조 중재지	17
제26조 절차의 언어	18
제27조 준거법과 우의적 중재인.....	18
제28조 중재의 진행	18
제29조 사실관계의 확인.....	19
제30조 구술심리	19
제31조 이의권	19
제32조 절차의 종료	19
제33조 임시처분 및 보전처분.....	20
제34조 절차종료의 방법.....	20
제35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21
제36조 중재판정	21
제37조 비용에 대한 결정.....	22
제38조 화해	22
제39조 중재판정문의 정정, 해석 및 보충	22
제40조 중재판정부로의 이송.....	23
제41조 중재판정문의 발간.....	23

비용

제42조 예납.....	24
제43조 추가 절차비용의 예납.....	25
제44조 절차비용의 구성 및 계산.....	25

기타 규정

제45조 신속 절차.....	27
제46조 책임면제.....	28
제47조 경과규정.....	28

부칙

부칙 1 표준중재조항.....	31
부칙 2 이사회내규.....	32
부칙 3 요금표.....	33
부칙 4 선정권자로서의 비엔나국제중재센터.....	33
부칙 5 조정규정.....	34

총칙

비엔나국제중재센터

제1조

(1) 당사자들의 합의 시에 최소한 당사자 일방의 영업소 또는 상거소가 오스트리아 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이하 “비엔나규칙”)에 준거하여 비엔나 소재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의 국제중재센터(이하 “비엔나국제중재센터” 또는 “중재센터”)가 중재를 진행한다.

국제적 성격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오스트리아에 영업소 또는 상거소가 있는 당사자들은 비엔나규칙에 따라 구성될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도 합의 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이 비엔나규칙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합의하는 경우, 중재 개시 당시에 유효한 비엔나규칙이 적용된다.

(3) 오스트리아에 영업소 또는 상거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들이 중재합의 시 비엔나규칙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와 분쟁의 성격이 국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비엔나경제회의소의 상설중재재판소가, 또는 오스트리아 내 제 3 의 중재지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된 중재지를 관할하는 지역경제회의소가 중재의 관할권을 갖는다. 후자는 지역경제회의소의 상설중재재판소 중재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사회

제2조

(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이사회는 최소한 다섯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는 비엔나국제중재센터 회장의 추천으로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확대수석위원회에 의해 5 년의 임기로 선정된다. 이사는 연임될 수 있다. 이사는 임기만료 시 새 이사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새 이사가 선정될 때까지 현직을 유지한다. 비엔나국제중재센터 회장의 추천에 따라,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확대수석위원회는 현이사회 잔여임기를 위해 이사회에 추가로 이사를 선정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사들중에서 임기동안 일할 회장 1 인과 부회장 2 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내규(부칙 2)에 따라 부회장 가운데 1 명이 그 직을 승계한다.

(3) 비엔나국제중재센터에 의한 중재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거나 관여한 바 있는 이사는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심의나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석하거나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사는 최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이며 어떠한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5)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부칙 2).

국제자문이사회

제 3 조

국제자문이사회는 그 임기 중에 이사회에 의해 초빙된 국제중재전문가로 구성된다. 국제자문이사회는 자문 역할로 이사회를 지원한다.

사무국장 및 사무국

제 4 조

(1) 비엔나국제중재센터 이사회의 추천에 의거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은 오스트리아 연방경제회의소 확대수석위원회에 의해 5 년의 임기로 선정된다.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은 연임될 수 있다. 임기 만료시 새로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은 새로운 선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고유업무를 제외한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행정 사무를 관리한다. 부사무국장이 선정된 경우, 부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의 유고시 또는 사무국장이 위임한 경우, 사무국장의 권한내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3) 비엔나국제중재센터에 의한 중재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거나 관여한 바 있는 사무국의 구성원은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심의나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참석하거나 참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은 최선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5) 사무국장과 부사무국장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 중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 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으로 선정된 이사는 임기 동안 이사직은 정지된다.

언어

제5조

당사자와 이사회 및 사무국의 서면 연락은 독일어 또는 영어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

제6조

(1) 비엔나규칙에서

1.1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이란 중재신청서 상의 1 인 또는 그 이상의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재에 참가한 1 인 또는 그 이상의 제 3 자를 말한다.

1.2 “신청인”이란 1 인 또는 그 이상의 신청인을 말한다.

1.3 “피신청인”이란 1 인 또는 그 이상의 피신청인을 말한다.

1.4 “제 3 자”란 1 인 또는 그 이상의 제 3 자로서, 진행 중인 중재에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아닌 자로서 진행 중인 중재에 참가 신청을 한 자를 말한다.

1.5 “중재판정부”는 단독중재인 또는 3 인의 중재인단을 말한다.

1.6 “중재인”은 1 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을 말한다.

1.7 “배석중재인”은 의장중재인을 제외한 중재인단 모두를 말한다.

1.8 “판정”은 최종, 일부 또는 임시 판정 모두를 말한다.

1.9 “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의 유고시 또는 사무국장의 위임을 받아 결정을 내리는 부사무국장도 포함한다.

(2) 이 규칙에서 자연인을 지칭하는 경우, 이는 남녀 모두에 적용된다.

중재의 개시

중재신청

제 7 조

(1) 중재는 사무국에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일자에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써 절차는 진행중이 된다.

(2) 중재신청서(첨부포함)는 각 당사자, 각 중재인 및 사무국에 한 부씩 제출되어야 한다.

(3) 중재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1 당사자들의 정식 명칭, 주소, 기타 연락처

3.2 사실관계 및 구체적 청구취지

3.3 요청된 청구가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중재신청서 제출당시의 각 개별 청구의 금전적 가치

3.4 제 17 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관련한 사항

3.5 3 인 중재인단에 합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중재인의 지명, 또는 이사회에 의한 중재인 선정 요청

3.6 중재합의와 그 내용에 대한 사항

(4) 중재신청서가 동조 제 3 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부수에 미달되거나 첨부이 빠진 경우, 사무국장은 신청인에게 그 미비점을 보충하거나 중재신청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사무국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보충 또는 보완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 선언할 수 있다 (제 34 조 제 4 항). 이는 신청인이 동일한 청구를 추후 다른 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사무국장은 동조 제 4 항에 따른 보충명령이 내려진 바 없거나, 그러한 명령을 신청인이 준수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중재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6) 이사회는 중재합의가 비엔나규칙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거나 부적합한 경우 절차의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

제 8 조

- (1) 사무국장은 중재신청서의 송달과 함께 피신청인에게 30 일 이내에 각 당사자, 각 중재인 및 사무국에 요구되는 수의 답변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2) 답변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1 피신청인의 정식 명칭, 주소, 다른 연락처 정보
 - 2.2 청구취지와 중재신청서가 기초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및 피신청인의 구체적 청구취지
 - 2.3 제 17 조에 따른 중재인의 수와 관련한 사항
 - 2.4 3 인 중재인단에 합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중재인의 지정, 또는 이사회에 의한 중재인 선정 요청

반대신청

제 9 조

- (1)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청구는 반대신청으로서 동 절차에서 제기될 수 있다.
- (2) 반대신청은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고 비용의 예납 후에 중재판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 7 조 역시 반대신청에 유추적용된다.
- (3)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경우 반대신청을 사무국에 반송하여 별개의 절차로 진행토록 할 수 있다.
 - 3.1 당사자들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또는
 - 3.2 답변서 이후 제출된 반대신청이 본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 (4)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에게 이유 있다고 인정된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8 조 역시 반대신청에 대한 답변에 유추적용된다.

신청요금

제 10 조

- (1)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반대신청)의 제출과 함께 부칙 3 에 명기된 제경비가 없는 신청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 3 자 참가의 경우(제 14 조) 그 요청당사자 측이 신청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2) 중재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있는 경우, 추가 당사자마다 10 퍼센트씩 인상된다. 단, 신청요금은 최대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
- (3) 신청요금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신청요금은 납부당사자의 예납금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4) 중재신청서와 제 3 자의 참가신청서는 신청요금을 완납한 이후에만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사무국장은 합리적 기간을 정하여 신청요금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기한까지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제 34 조 제 4 항). 이는 신청인이 동일한 청구를 추후 다른 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기록의 송부

제 11 조

사무국장은 다음의 각 사항들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기록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1) 사무국장이 제 7 조의 요건에 따른 중재신청(반대신청) 접수
- (2)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전원 선정
- (3) 제 42 조에 따른 비용의 전액 예납

기한, 송달 및 서면제출

제 12 조

(1) 서면이 동조 2 항에 규정된 방식에 의거 기한만료일에 송부된 경우 그 서면제출은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2) 송달은 수신인의 송달주소로서 서면으로 최후에 알려진 주소로 한다. 송달은 등기우편 또는 영수증을 받거나, 택배, 팩시밀리, 이메일 또는 송신의 확인이 보장되는 다른 전기통신에 의해 보내진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송달은 다음 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3.1 수신자가 송달되어야 할 서면을 실제로 송달받은 일자, 또는

3.2 동조 제 2 항에 의거 보내진 경우, 수령 예정 일자

(4) 당사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였다면 서면으로 최후에 알려진 대리인 주소지로의 송달은 당사자에 대한 유효한 송달로 간주한다.

(5) 모든 서면과 첨부는 각 중재인, 각 당사자 및 사무국이 한 부씩 받을 수 있도록 요구되는 수만큼 제출되어야 한다. 기록이 중재판정부에 송부된 이후에는 모든 서면과 첨부는 동조 제 2 항의 방식 또는 중재판정부가 지시하는 방식에 따라 각 당사자, 각 중재인 및 사무국에 직접 전송되어야 한다. 사무국은 중재판정부로부터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서면송달과 연락의 사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6) 기한은 기한의 개시를 알리는 개별 서면이 송달된 날의 익일부터 기산된다. 해당일이 송달지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기한은 다음 영업일로부터 개시된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이 기간의 중간에 있더라도 기한의 기산이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아니한다. 기한의 만기일이 송달지의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기한은 그 다음 영업일에 만료된다.

(7) 다수의 피신청인에 대한 중재신청서가 모든 피신청인에게 송달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중재는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피신청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나머지 피신청인에 대한 중재신청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리

제 13 조

중재판정부의 절차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선임한 자에 의해 대리되거나 자문받을 수 있다. 사무국장 또는 중재판정부는 언제든지 당사자 대리인에게 대리권의 증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자의 참가 및 병합

제 3 자의 참가

제 14 조

(1) 중재판정부는 제 3 자의 중재참가 및 그 방식을 당사자 일방 또는 제 3 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당사자와 참가하려는 제 3 자의 의견 뿐만아니라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한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1 제 3 자의 정식 명칭, 주소, 다른 연락처 정보

2.2 참가신청의 근거, 그리고

2.3 제 3 자 참가방식

(3) 제 3 자의 참가신청이 중재신청과 함께 이루어진 경우,

3.1 이는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7 조 이하의 규정들이 유추적용된다. 사무국장은 중재신청서를 참가하려는 제 3 자 및 다른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 3 자가 참가신청한 경우, 사무국장은 진행중인 중재의 당사자들에게 참가신청서 사본을 교부하고 그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3.2 제 3 자는 중재인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 18 조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3.3 중재판정부는 중재신청서를 제 3 자의 참가신청서와 함께 사무국에 반송하여 별개 절차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미 지명 또는 선정된 중재인을 취소하고 제 17 조 이하의 규정들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새로운 구성을 명할 수 있다.

병합

제 15 조

(1)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을 시 다음의 경우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절차가 병합될 수 있다.

1.1 당사자들이 병합에 합의하는 경우, 또는

1.2 동일한 중재인(들)이 지명 또는 선정된 경우

또한 청구들의 기초가 되는 모든 중재합의 상의 중재지가 동일한 경우.

(2) 이사회는 당사자들과 선정된 중재인들의 의견을 들은 후 요청된 병합여부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사회는 결정과정에서 중재합의들의 양립성 및 절차의 개별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

중재인

제 16 조

(1) 각 당사자는 그의 중재인을 자유로이 지명할 수 있다. 완전한 법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사자들이 어떠한 특정 추가적 자격 요건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누구든 중재인이 될 수 있다. 중재인들은 당사자들과 계약관계를 가지며 당사자들에게 충실하여야 한다.

(2) 중재인들은 그들의 권한을 당사자들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최선의 지식과 능력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여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들은 직무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3)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이를 수락할 자는 그 선정 전에 그의 (i) 공정성과 독립성, (ii) 유용성, (iii) 직의 수락여부, (iv) 비엔나규칙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재인은 그의 공정성, 독립성 또는 유용성에 관하여 의혹을 야기할 만한 또는 당사자의 합의와 충돌할 만한 모든 정황에 대해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그러한 정황에 대한 즉시 고지의무는 중재의 전 과정에서 지속된다.

(5) 이사회는 이사는 당사자 또는 배석중재인들에 의해 중재인으로 지명될 수 있으나, 이사회에 의하여 중재인으로 선정되지는 못한다.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 17 조

(1) 당사자들은 단독중재인 또는 3 인의 중재인단에 의해 중재절차가 진행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방식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동조 제 2 항부터 제 6 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중재인의 수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사회는 단독중재인 또는 3 인 중재인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결정한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는 사건의 복잡도, 분쟁의 규모, 신속성과 결과의 비용효과적 측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분쟁이 단독중재인에게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사무국장의 요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공동으로 한 명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그 중재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지명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4) 분쟁이 중재인단에게 회부되는 경우, 중재인을 아직 지명하지 못한 당사자는 사무국장의 요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중재인 후보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이사회는 당사자가 기한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 중재인을 선정한다.

(5) 분쟁이 중재인단에게 회부되는 경우, 배석중재인들은 사무국장의 요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의장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하고, 그의 성명, 주소 및 기타 연락처 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지명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

(6)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지명한 중재인이 사무국장 또는 이사회에 의해 승인됨과 동시에 자신들의 중재인 지명에 구속된다 (제 19 조).

다수당사자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 18 조

- (1) 다수당사자 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구성은 제 17 조에 의거 이루어지며, 다음의 보충규정을 둔다.
- (2) 분쟁이 중재인단에 회부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측은 공동으로 사무국장에게 그들의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 (3)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의 공동 지명에 대한 참여하더라도 다수당사자 중재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 (4) 동조 제 2 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공동중재인이 지명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해당 당사자/당사자들을 위하여 중재인을 선정한다. 예외적으로 이사회는 당사자들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 후, 이미 이루어진 선정을 취소하고 배석중재인 또는 모든 중재인을 새로 선정할 수 있다.

지명의 승인

제 19 조

- (1) 중재인이 지명된 후, 사무국장은 제 16 조 제 3 항에 따라 중재인의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사무국장은 그 진술서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중재인으로서의 공정성, 독립성과 그의 권한을 수행하는 능력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면 지명된 중재인을 승인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그 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2)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사회가 지명된 중재인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3) 지명된 중재인은 승인받음으로써 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 (4) 사무국장 또는 이사회가 지명된 중재인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는 당사자 또는 배석중재인에게 다른 배석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을 30 일 이내에 지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 16 조부터 제 18 조가 유추적용된다. 사무국장 또는 이사회가 새로이 지명된 중재인의 승인을 거부할 경우, 지명권은 실효되고 이사회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인 기피

제 20 조

- (1)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정황이 존재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피될 수 있다. 당사자는 그가 지명하거나 지명에 참여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그 지명 또는 지명에 참여한 이후에 알게 된 사유를 근거로만 기피할 수 있다.
- (2) 당사자의 중재인 기피신청은 그 기피의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피신청은 기피사유를 명시하고 기피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자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기피신청에 대해 판단한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 사무국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과 다른 당사자들에게 의견개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 3 자에게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의견은 당사자들과 중재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4) 기피의 대상이 된 중재인을 포함한 중재판정부는 기피신청이 계류중일 때에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사회가 기피신청에 대해 판단할 때까지는 중재판정을 내리지 못한다.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

제 21 조

- (1) 중재인의 권한은 다음 각호의 경우 조기종료한다.
 - 1.1 당사자간의 그러한 합의
 - 1.2 중재인의 사임
 - 1.3 중재인의 사망
 - 1.4 중재인이 기피된 경우
 - 1.5 이사회에 의해 중재인이 그 직에서 해임된 경우

(2) 일방 당사자는 중재인이 일정 기간 이상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당한 지연없이 추진할 의무를 포함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중재인의 해직을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사무국에 해임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인의 무능이 일시적이지 않거나 중재인이 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사회에 명백한 경우, 이사회는 당사자의 신청없이 중재인을 해직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당사자들과 해당 중재인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준 후에 해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의 효과

제 22 조

(1) 중재인 권한의 조기종료 시 (제 21 조), 중재인은 교체되어야 한다. 대체 중재인의 선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선정절차에 따른다. 그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장은,

1.1 단독중재인의 경우 당사자들, 또는

1.2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의 경우 잔류 배석중재인들, 또는

1.3 당사자 일방이 지명하는 경우 중재인 지명당사자,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 선정을 대신하게 한 경우의 당사자에게

30 일 이내에 대체중재인을 지명하고 (동조 제 1.1 항과 1.2 항의 경우), 후보자의 성명, 주소, 기타 연락처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 16 조부터 제 18 조는 유추적용된다. 기한 내에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사회가 대체중재인을 선정한다. 대체중재인에 대한 기피가 인정된 경우(제 21 조 제 1.4 항)에는 대체중재인 지명권은 실효되고 이사회가 대체중재인을 선정한다.

(2) 중재인의 권한이 제 21 조에 따라 조기종료하는 경우, 새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한 후 중재의 앞선 절차들의 반복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반복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가 기피

전문가 기피

제 23 조

제 20 조 제 1 항과 제 2 항은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임된 전문가의 기피에 유추적용된다. 중재판정부가 그 기피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제 24 조

(1)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 전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는 제 17 조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 또는 제 18 조에 따라 중재인 지명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때문에 이의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재판정부가 권한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의는 중재 과정에서 권한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발생하자마자 제기되어야 한다.

지체된 이의는 양 조항의 경우에서 금지되나, 중재판정부가 그 지체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지체된 이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그의 고유 관할권을 판단한다. 관할권에 대한 판단은 본안판단과 함께 또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의 비용 부담을 판단한다.

중재판정부의 절차

중재지

제 25 조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면 다음에 따른다.

(1) 중재지는 비엔나이다.

(2) 중재판정부는 적당하다고 여기는 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장소와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평결할 수 있다.

절차의 언어

제 26 조

당사자들의 합의 부재시, 중재판정부는 기록의 송부 후 즉시 계약서의 언어를 포함한 모든 정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중재의 특정 언어 또는 복수의 언어를 결정하여야 한다.

준거법과 우의적 중재인

제 27 조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규에 따라 판정을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정한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지정은 당해 국가의 실체법을 직접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국가의 국제사법조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이 준거법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자신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과 선의 원칙에 따라 또는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판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의 진행

제 28 조

(1) 중재판정부는 달리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비엔나규칙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쌍방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들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사전공지를 조건으로 특히 변론, 증거의 제출, 증거채택요청을 절차의 특정시점까지만 인정되도록 선언할 수 있다.

사실관계의 확인

제 29 조

- (1)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 당사자 또는 증인 신문, 당사자에 대한 증거제출 요청, 또는 전문가 요청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증거조사, 특히 전문가 선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 43 조가 적용된다.
- (2) 중재는 당사자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진행된다.

구술심리

제 30 조

-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당사자간에 구술심문을 개최하지 아니한다는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그러한 심문을 개최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청과 변론 및 증거절차의 결과에 대하여 승인과 의견개진의 기회를 가진다.
- (2) 구술심문일자는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이 정한다. 심문은 비공개이다.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은 심문결과를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의권

제 31 조

중재판정부의 비엔나규칙 또는 절차에 적용되는 다른 법규 규정의 위반을 당사자가 알고 있다면 중재판정부에게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사자는 그의 이의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된다.

절차의 종료

제 32 조

당사자가 서면제출 및 증거제출의 적절한 기회를 가졌다고 확신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공표하고, 최종판정문이 선고될 예정일을 사무국장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언제든지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임시처분 및 보전처분

제 33 조

- (1)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관련서류를 수령하는 즉시 (제 11 조)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과 그러한 처분에 대한 수정, 정지,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국내법원에서 집행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동조에 따른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의 지시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2 인 이상인 중재에서는 의장중재인의 서명으로 유효하다. 만약 의장중재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을 하는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의 서명이 없는 이유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며, 처분지시는 그 중재인의 서명으로 유효하다.
- (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의 지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 지시에는 처분일자과 중재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 (4) 처분의 지시는 중재판정문과 같은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 36 조 제 5 항).
- (5) 동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의 규정은 당사자들이 관할국가기관에 임시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국가기관에 그러한 처분을 신청하거나 중재판정부가 명한 조치의 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중재합의에 대한 위반 또는 권리포기로 여겨지지 않으며 중재판정부가 보유한 해당 권한도 유지된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신청의 제기 및 이에 대해 국가기관이 취한 모든 조치를 사무국과 중재판정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절차종료의 방법

제 34 조

절차는 다음의 각 경우에 종료된다.

- (1) 중재판정의 선언
- (2) 합의의 확정 (제 38 조)

(3) 다음 경우의 중재판정부의 지시

3.1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하는 것이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당사자들이 중재의 종료에 합의하고 이를 중재판정부에 알리는 경우

3.3 중재판정부가 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중재 당사자들이 중재의 종료 가능성을 최고의 중재판정부의 서면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4) 보완지시(제 7 조 제 4 항) 또는 지불지시(제 42 조 제 3 항)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무국장의 공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제 35 조

(1) 중재판정부에 의한 모든 중재판정문과 모든 결정은 중재인 전원의 과반수 의결을 요한다. 중재인들의 과반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결정한다.

(2) 배석중재인들이 동의하는 경우 의장중재인은 중재절차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

제 36 조

(1) 중재판정문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문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전원이 이유의 불기재에 관하여 서면으로 또는 구술공판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재판정문에는 판정일자과 중재지를 명기하여야 한다(제 25 조).

(3) 모든 중재판정문 정본에는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일부 중재인이 서명하기를 거절하거나 적절한 기간내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의해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중재인의 서명으로 유효하다. 중재판정이 과반수 결정이나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반대 중재인의 요청에 의해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중재판정문의 모든 정보는 사무국장의 서명과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판정임을 확인하는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관인, 그리고 비엔나규칙에 따라 선정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5) 사무국장은 중재판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문은 송달됨으로써 당사자들을 구속하게 된다. 사무국은 중재판정문 원본 한 부를 보관하고, 송달을 증명하는 서류도 보관하여야 한다.

(6) 당사자의 요청 시, 단독중재인 내지 의장중재인 (유고시 다른 중재인) 또는 이들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중재판정문이 종국적이며 유효함을 모든 정보에 확인하여야 한다.

(7) 비엔나규칙에 동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중재판정의 조건들을 준수하는데 동의한다.

비용에 대한 결정

제 37 조

절차가 종료한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시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문 또는 별개의 결정문에 제 44 조 제 1.1 항에 따라 사무국장에 의해 결정된 중재의 비용, 제 44 조 제 1.2 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적정 비용의 총액, 및 제 44 조 제 1.3 항에 따른 기타 추가적 경비를 기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누가 절차의 비용을 부담할지 또는 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비용의 배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화해

제 38 조

당사자들은 합의한 화해 내용을 기록하도록 또는 합의한 조건에 대한 화해를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문의 정정, 해석 및 보충

제 39 조

(1)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대한 다음의 신청들을 사무국에 제기할 수 있다.

1.1 중재판정문 상의 오산, 오타, 인쇄상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의 수정

1.2 중재판정문의 특정 쟁점에 대한 해석

1.3 중재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중재판정문에서 누락된 청구에 대한 추가 판정

(2) 중재판정부는 상기 신청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진술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추가 관리요금과 중재판정부의 추가적 경비 및 요금을 포괄하는 예납금을 결정하고, 그러한 신청을 다루는 것은 이전 예납금의 완납여부에 달려있다. 추가중재인의 수당 및 추가적 관리요금은 사무국장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권으로 동조 제 1.1 항의 수정 또는 제 1.3 항의 보충을 할 수 있다.

(4) 제 36 조 제 1 항부터 제 6 항은 판정문의 정정, 해석 및 보충에 적용된다. 정정 및 해석은 부록의 형식이어야 하며, 이는 중재판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중재판정부로의 이송

제 40 조

국가기관이 절차를 중재판정부에 이송하는 경우, 비엔나규칙의 규정들이 유추적용된다. 사무국장과 이사회는 중재판정부가 이송된 건의 요구사항에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중재판정부의 추가 경비와 요금 및 관리요금의 예납을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문의 발간

제 41 조

이사회와 사무국장은 당사자가 중재판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 일 이내에 발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판정문을 익명으로 요약 또는 발췌하여 법률 학술지나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자체 출판물에 게재할 수 있다.

비용

예납

제 42 조

- (1) 사무국장은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예상되는 관리요금, 중재인수당 및 경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예납금은 납부요청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 일 이내에 기록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담시켜 납부되어야 한다. 다수당사자 절차에서는 예납금의 절반은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나머지 절반은 피신청인들이 공동으로 납부한다. 동조에서 언급되는 당사자 일방이란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당사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2) 비엔나규칙에 동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동조 제 1 항에 따른 배분비율에 따라 예납 의무를 상호 부담한다.
- (3) 당사자 일방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무국장은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요청의 송달시로부터 30 일 이내에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미납당사자가 지는 동조 제 2 항에 따른 예납금의 자기부담분 부담의무은 이로부터 영향받지 않는다. 만일 정해진 기간내에 그 분담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장은 절차의 종료를 공표할 수 있다 (제 34 조 제 4 항 의거). 이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청구를 추후 다른 절차에서 제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4) 당사자가 동조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비용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대방 당사자가 동조 제 3 항에 따라 그 분담액을 납부한 경우, 납부당사자의 요청 시 중재판정부는 미납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에 대한 관할권의 범위내에서 납부당사자에게 판정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변제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제 37 조에 따라 비용의 최종배분을 결정하는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사무국장이 추가예납을 결정할 시, 동조 제 1 항부터 제 4 항에 규정된 절차가 유추적용된다. 추가예납이 이루어지기까지 원칙적으로 중재판정부는 예납비용의 증액 또는 추가를 초래한 청구에 대해서 다루지 아니한다.

추가 절차비용의 예납

제 43 조

- (1) 중재판정부가 전문가, 번역가 또는 통역사의 선정, 절차상의 속기록, 현장방문, 또는 심리장소의 변경과 같이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상의 특정단계를 고려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사무국에 이를 알리고 잠재비용이 마련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2) 중재판정부는 잠재비용이 충분히 마련된 경우에만 동조 제 1 항에 따른 절차상의 단계를 진행한다.
- (3) 중재판정부는 만일 동조에 따른 예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련의 결과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 (4) 절차상의 단계들과 관련한 동조 제 1 항에 언급된 모든 지시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절차비용의 구성 및 계산

제 44 조

- (1) 절차비용은 다음의 각호로 구성된다.
 - 1.1 비엔나국제중재센터의 관리요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재인수당, 경비 (중재인들의 여행 및 생활 비용, 통신비용, 임대, 법원서기 수당 등), 그리고
 - 1.2 당사자 비용, 예를 들어 당사자들의 법적대리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 1.3 중재와 관련된 특히 제 43 조 제 1 항에 나열된 기타 경비
- (2) 사무국장은 분쟁금액에 따라 요금표(부칙 3)에 기초한 관리요금 및 중재인수당을 계산하고, 절차의 말미에 경비와 함께 그러한 요금과 수당을 결정하여야 한다(동조 제 1.1 항).

중재판정부는 동조 제 1.2 항과 제 1.3 항에 기재된 비용과 기타 경비를 결정하고 이를 중재판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37 조).
- (3) 분쟁금액을 확정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이 일부청구만 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청구가 명백하게 과소평가되었거나 전혀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 사무국장은 당사자들의 요구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 (4) 중재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연관된 경우, 부칙 3 에 언급된 관리요금 및 중재인수당은 각 추가 당사자마다 10 퍼센트씩, 최대 50 퍼센트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 (5) 반대신청 및 제 3 자의 참가신청에 따른 관리요금 및 중재인수당은 사무국장에 의해 계산되고 당사자들에 의해 별도로 납부되어야 한다.
- (6) 기존 청구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는, 그러한 청구를 판단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추가적 업무부담에 대한 관리비용 및 중재인수당은 별도로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7) 부칙 3 에 언급된 중재인수당은 단독중재인에 해당된다. 중재인단을 위한 총 수당은 단독중재인의 수당요율의 2.5 배이다. 특히 복잡한 사건에서는 사무국장은 중재인수당 (단독중재인 및 중재인단)을 최대 30 퍼센트까지 인상할 수 있다.
- (8) 부칙 3 에 기재된 요금은 관할권판정과 같은 모든 부분적 및 임시 결정, 일부판정, 전문가에 대한 기피결정, 보전 또는 임시 처분의 지시, 파기에 따른 절차상의 추가적 단계를 포함한 기타 결정들과 절차상의 지시를 포함한다.
- (9) 분쟁금액의 삭감은 관리요금 및 중재인수당의 계산에 고려되어야 한다. 단, 그러한 삭감이 중재판정부에 기록이 송부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 (10) 절차가 조기종료된다면 사무국장은 중재인수당을 중재종료 당시의 절차 진행단계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방법으로 삭감할 수 있다.
- (11) 경비는 실제지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12) 부칙 3 에 기재된 요금은 중재인수당에 적용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의 수당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중재인들은 직을 수락한 때에 사무국장에게 예상되는 부가가치세액을 알려야 한다.

기타 규정

신속 절차

제 45 조

- (1) 신속절차에 대한 보충 규정들은 당사자들이 이를 중재합의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그 적용에 합의한 경우에 적용된다. 당사자들의 신속절차에 대한 합의는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보다 선행하여야 한다.
- (2) 신속절차 규정들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비엔나규칙의 일반 조항들이 다음과 같은 변경들에 적용된다.
- (3) 제 42 조에 따른 예납의 납부기한은 15 일로 줄어든다.
- (4) 반대신청이나 반소는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의 제출기한까지만 가능하다.
- (5) 신속절차는 당사자들이 중재인단에 합의하지 않는 한, 단독중재인에 의해 진행된다.
- (6) 분쟁이 단독중재인에 회부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사무국장의 해당 요청을 수령한 때로부터 15 일 이내에 단독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기한내에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이사회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
- (7) 분쟁이 중재인단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중재신청서에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사무국장의 요청의 수령한 때로부터 15 일 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에 의해 지명된 중재인들은 사무국장의 요청을 수령한 때로부터 15 일 내에 의장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그 기한내에 지명되지 못하면 이사회가 중재인을 선정한다.
- (8) 중재판정부는 절차가 조기종료되지 않는 한, 기록의 송부로부터 6 개월 내에 최종 중재판정을 내려야 한다. 사무국장은 중재판정부의 합리적 요청 또는 그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판정의 기한을 넘기더라도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 (9) 중재는 중재판정부가 기록의 송부시부터 6 개월내에 최종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다음의 조항들이 적용된다.

- 9.1 중재신청서와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의 제출 이후에, 당사자들은 일 회에 한하여 추가로 서면을 교환할 수 있다.
- 9.2 당사자들은 모든 사실관계에 관한 논쟁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서면증거를 이에 첨부한다.
- 9.3 당사자들에 의해 요청되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범위에서, 중재판정부는 일회의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이때 모든 구술증거가 제출되고 모든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어야 한다.
- 9.4 구술심리 이후에는 어떠한 서면도 제출할 수 없다.

책임면제

제 46 조

중재인들,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이사회와 이사,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와 그 직원들의 중재와 관련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면제된다.

경과규정

제 47 조

본 비엔나규칙은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접수되는 중재신청의 모든 절차에 적용되어야한다.

부칙

표준중재조항

부칙 1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혹은 청구(계약의 유효성, 위반, 해지 또는 무효에 관한 분쟁을 포함)는 비엔나 소재 오스트리아연방경제회의소 국제중재센터의 중재규칙(비엔나 규칙)에 의거 선정된 1 인 또는 3 인의 중재인에 의해 중국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가능한 보충 합의사항

- (1) 신속절차 규정들을 적용한다.
- (2) 중재인의 수는(1 인 또는 3 인)으로 한다.
- (3)의 실체법을 적용한다.*)
- (4) 중재에 사용될 언어는이다.

* 유엔국제물품거래협약(1980)의 적용배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사회의 내규

부칙 2

- (1) 이사회의 회의는 회장에 의해 소집되고, 그 또는 부회장 중 일인에 의해 주재된다.
- (2) 이사회는 이사의 삼분의 일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 정족수를 충족한다. 전화 또는 영상회의와 인터넷을 통한 참가도 출석으로 유효된다.
- (3) 이사회는 투표권을 가진 현 이사들의 단순 다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찬반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4) 2 명의 부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는 회장 재직 이사가 수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로서 회장 재임이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5) 비엔나국제중재센터에 의한 중재에 어떤 역할로건 관여하거나 관여한 바 있는 이사는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심의나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석하거나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이사회의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 회람결정은 허용된다. 이 경우, 회장은 서면제안을 이사들에게 전달하고 서면투표의 기한을 정한다. 본 부칙 제 2 항과 제 3 항은 유추적용된다. 각 이사는 서면제안에 관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 (7) 이사회는 결정의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요금표

부칙 3

신청요금 1,500 유로¹

관리요금²

분쟁금액 (유로)		요금 (유로)
이상	이하	
0	100,000	1,500
100,001	200,000	$3,000 + (\text{신청금액} - 100,000) \times 1.875\%$
200,001	500,000	$4,875 + (\text{신청금액} - 200,000) \times 1.250\%$
500,001	1,000,000	$8,625 + (\text{신청금액} - 500,000) \times 0.875\%$
1,000,001	2,000,000	$13,000 + (\text{신청금액} - 1,000,000) \times 0.5\%$
2,000,001	5,000,000	$18,000 + (\text{신청금액} - 2,000,000) \times 0.125\%$
5,000,001	10,000,000	$21,750 + (\text{신청금액} - 5,000,000) \times 0.063\%$
10,000,000 이상		$24,900 + (\text{신청금액} - 10,000,000) \times 0.013\%$ 최대 35,100 유로

단독증재인 수당³

분쟁금액 (유로)		요금 (유로)
이상	이하	
0	100,000	신청금액 x 6% - 최소비용 3,000
100,001	200,000	$6,000 + (\text{신청금액} - 100,000) \times 3.00\%$
200,001	500,000	$9,000 + (\text{신청금액} - 200,000) \times 2.50\%$
500,001	1,000,000	$16,500 + (\text{신청금액} - 500,000) \times 2.00\%$
1,000,001	2,000,000	$26,500 + (\text{신청금액} - 1,000,000) \times 1.00\%$
2,000,001	5,000,000	$36,500 + (\text{신청금액} - 2,000,000) \times 0.60\%$
5,000,001	10,000,000	$54,500 + (\text{신청금액} - 5,000,000) \times 0.40\%$
10,000,001	20,000,000	$74,500 + (\text{신청금액} - 10,000,000) \times 0.20\%$
20,000,001	100,000,000	$94,500 + (\text{신청금액} - 20,000,000) \times 0.10\%$
100,00,000 이상		$174,500 + (\text{신청금액} - 100,000,000) \times 0.01\%$

¹ 제 10 조 | ² 제 44 조 제 2 항 | ³ 제 44 조 제 7 항

선정권자로서의 비엔나국제중재센터

부칙 4

비엔나국제중재센터가 선정권자로 요청된 경우, 그 요청자는 매 요청마다 2,000 유로의 반환불가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요청은 요금의 총액이 완납된 후에 진행된다.

조정규정

부칙 5

- (1) 비엔나국제중재센터가 본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때,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유효한 중재합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 (2) 조정절차 개시요청은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러한 요청의 송달로부터 30 일 이내에 반대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 (3) 반대당사자(들)이 조정을 수용할 때, 이사회는 이사 중 1 인 또는 다른 책임자를 조정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당사자들도 합의하여 조정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기록을 검토하고, 분쟁을 토의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하고, 분쟁의 원만한 해결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조정자가 서명한다. 당사자 전원의 요청이 있고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할 경우, 이사회는 조정자를 단독중재인으로 선정한다. 단독중재인은 합의를 중재화해의 형태로 기록하거나, 또는 만일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경우 합의한 조건에 대한 중재판정을 내린다.
- (5)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들은 어떠한 차후 중재에서 조정절차 과정에서의 진술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조정자는 동 부칙 제 4 조의 조건을 제외하고는 차후 중재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되지 못한다.
- (6) 조정절차와 동 부칙 제 4 항에 언급된 조건에 따른 조정자의 직무수당은 사무국장에 의해 상응하는 분쟁금액에 기초하여 중재에 적용되는 요금의 적정 부분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비엔나규칙 제 44 조). 이는 사무국장이 정하는 예납에도 적용된다 (비엔나규칙 제 42 조).



**Vienna International Arbitral Centre
of the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VIAC)**
Wiedner Hauptstrasse 63, 1045 Vienna, Austria

T +43 (0)5 90 900 4398
F +43 (0)5 90 900 216
e office@viac.eu

www.viac.eu
